

사천시청맞춤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가 2006. 10. 13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10. 13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55호)

다 2006. 10. 24 :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,
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가 제안이유

-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동서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축부지로 변경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.

나 주요내용

- 1) 법제처 법령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인용법명 낫표(「) 표시(안 제1조)
- 2) 동서동사무소 소재지를 서동 303-1번지에서 서동 272-4번지로 변경(별표와 같음)

다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- 지방자치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개정조례안은 동서동사무소의 신축 준공으로 인하여 동서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동 303-1번지에서 서동 272-4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의 규정에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, 대민 행정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